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
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.

○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나타나고,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, 예방교육 추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, 수사기관 및 전문가,

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- 또한 자문위원회에 관련 기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,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,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시 수사 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- 둘째,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- 셋째,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동 위원회에 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